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6. 6. 10.
행정재무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5월 2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1996년 5월 28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4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조남성)

가. 제안이유

ㅇ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ㅇ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조항 삭제(안 제19조 제1항)
ㅇ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안 제21조 제2항)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허 영훈)

금번 개정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19조 제1항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조항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를 "법 제266조 제3항에서"로 개정하여 법 제266조 제4항 인용조문을 삭제하는 것과 제21조 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으로"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며, 그 사유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대하여 '95.12.6.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4995호)됨에 따라 면제 조항이던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이 삭제되어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는 것은 '95.12.30.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대통령령 제14878호)가 개정되어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보완하게 된 것으로 이는 상위 관계법령인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 査 結 果 : 원 안 의 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3

제출년월일 : 1996. 5. 27.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조항 삭제(안 제19조 제1항)
○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안 제21조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법 제26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나. 합의사항 : 없음
다. 예산조치 : 없음
라. 조 례 안 : 별첨

따로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1항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를 "법 제266조 제3항에서"로 한다.
제21조 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으로"를 "시가표준액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 제3항에서 ·····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 (과세표준) ① (생략)	제21조 (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시가표준액으로·····